

##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· 고시현황

### □ 하수종말처리시설

번호	처리시설명	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고시번호	고시일자	기준(mg/l이하)						비고
					BOD	COD	SS	T-N	T-P	기타	
1	광양시 광영	5,500	'99-157	'99.10.9	250	250	250	-	-		
2	부산시 녹산산단	160,000	'99-147	'99.09.17	150	150	150	-	-		
3	김천산단	80,000	'99-3	'99.01.08	250	300	250	-	-		
4	영암 대불공단	56,000	'97-42	'97.06.02	500	380	280	-	-		
5	안성 시범산단	3,000	'95-140	'95.12.19	150	150	150	-	-		고시폐지('02.11.15)
6	전주1·2산단	303,000	'91-5	'91.01.22	200	200	200	-	-		
7	온 산	150,000	'00-146	'00.12.12	200	250	200	-	-		
8	왜 관	20,000	'01-33	'01.03.05	-	-	-	-	-	n-H 25	다만, n-H의 방류수수 질기준은 1mg/l이하로 한다. *2001.7.1부터 시행
9	군 산	20,000	'02-165	'02.11.05	400	400	200	200	10		

## □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

번호	처리시설명	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고시 번호	고시일자	기준(mg/l이하)						비고	
					BOD	COD	SS	T-N	T-P	기타		
1	평택어연 · 한산산단	5,500	'99-185	'99.11.13	300	300	260					
2	여천산단	105,000	'98-106	'99.09.29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원폐수	n-H, 페놀20	다만, 석유화학업종은 BOD, COD, SS 300 이하	
			'02-209	'03.01.06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120	원폐수	n-H, 페놀20		
3	달성산단	28,000	'98-86	'98.08.01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다만, 수정제조업 등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.	
			'02-132	'02.08.21						n-H:100 mg/l(동)		방류수기준 : 5mg/l이하
										n-H:25 mg/l(광)		방류수기준 : 1mg/l이하
4	청주산단	31,000	'98-86	'98.08.01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		다만, 수정제조업 등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.	
			'03-38	'03.02.07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100	원폐수			

번호	처리시설명	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고시 번호	고시일	기준(mg/l이하)						비고
					BOD	COD	SS	T-N	T-P	기타	
5	대구 남천산단	115,000	'98-86	'98.08.01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다만, 섬유제조, 종이 및 담배 제조는 BOD, COD, SS 300이하
6	익산산단	40,700	'98-86	'98.08.01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		다만, 산업용화학, 가죽, 모피 제조는 COD 360이하
			'02-210	'03.01.07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200	원폐수		
7	진주 상평산단	35,000	'98-86	'98.08.01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n-H, 색도 원폐수	
8	괴산산단	4,300	'98-45	'98.05.08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
9	음성 대소산단	3,000	'95-22	'95.02.14	400	400	400	pH 40~8 6			
10	전주3산단	27,000	'94-73	'94.09.15	400	300	300	-			폐지('03.07.19)
			'03-118	'03.7.19	600	300	400	80	10		

번호	처리시설명	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고시 번호	고시일	기준(mg/1이하)						비고		
					BOD	COD	SS	T-N	T-P	기타			
11	대구 성서산단	80,000	'94-70	'94.09.06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		다만, 산업용화학제품 제조 시설, 기타화학제품 제조시설, 섬유제조시설 도금시설(주 공정) COD는 300이하		
			'02-148 (방)	'02.09.30								100mg/l 이하(동)	방류수기준:5mg/1이하(동)
			'02-149 (배)										
			'04-158	'04.10.21									
12	음성 대풍산단	2,500	'01-19	'01.02.12	170	170	170			n-H 원폐수	고시 시행일(2001.2.12) 전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		
				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		n-H 원폐수	고시 시행일(2001.2.12) 후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		
13	청원 현도산단	16,000	'02-143	'02.09.14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pH 원폐수	방류수기준:5.8~8.6 (고시'00-103호)		
14	천안 천홍산단	2,500	'93-58	'93.07.24	140	140	140	-					

번호	처리시설명	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고시 번호	고시일	기준(mg/l이하)						비고
					BOD	COD	SS	T-N	T-P	기타	
15	광양제철 연관산단	7,000	'93-23	'93.02.23	300	300	300	-			
16	대전3·4산단	30,000	'93-10	'93.02.18	400	300	300	-			
17	파주탄현	140	'00-145	'00.12.12	140	140	140	-			
18	양주검준 지방산단	23,000	'02-49	'02.04.03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pH, n-H (광유)는 원폐수로 한다.	방류수기준 : PH:5.8~8.6, 색도:200도이하, N-h : 5mg/l이하
19	안성제1산단	3,000	'02-171	'02.11.15	150	150	150	60	8		
20	포천양문산단	14,000	'02-201 '02-202	'02.12.28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원폐수	pH, n-H (광, 동), 색도	방류수기준:pH:5.8~8.6, 색도: 100도이하, n-H (광:1,동:10mg/l이하)
21	평택현곡	3,600	'04-63	'04.05.03	300	240	100	원폐수	원폐수		
22	화성발안	3,000	'04-81	'04.06.07	300	300	300	60	12		

## 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
번호	처리시설명	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고시번호	고시일	기준항목 (mg/l)				비고
					BOD	COD	SS	기타	
1	단양 적성	550	'99-146	'99.09.17	400	290	180	-	
2	화순 동면	1,200	'97-89	'97.09.27	840	780	500	-	
3	목포 산정	3,500	'95-81	'95.07.08	927	377	204	-	
4	영암 신북	1,300	'95-56	'95.05.30	300	300	165	-	
5	남제주 대정	350	'95-16	'95.02.07	355	200	230	-	
6	영동 계산	8,000	'95-15	'95.02.07	180	180	200	-	
7	부여 은산	200	'94-76	'94.09.30	350	260	110	-	
8	괴산 사리	200	'94-10	'94.02.17	175	175	165	-	
9	해남 옥천	200	'93-66	'93.08.11	200	200	190	-	
10	남원 동면	240	'93-55	'93.07.20	300	300	300	-	
11	합천 울곡	300	'92-56	'92.09.24	190	190	190	-	
12	고성 울대	1,000	'92-50	'92.09.17	1,650	1,650	1,230	-	
13	청양정산	550	'04-4	'04.01.14				ABS 1,500이하	방류수기준 (2mg/l 이하)